

# Tax News Flash

## - Transfer Pricing & Customs

December 30, 2024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1 이전가격

#### 미국의 디지털세 필라 1 Amount B 도입

미 재무부와 IRS(이하 "재무부")는 Amount B 의 미국 적용을 허용하는 공지를 2024 년 12 월 18 일 발표하였으며 미국 납세자들이 2025 년 1 월 1 일 이후의 과세연도부터 Amount B 이행체계 (Simplified and Streamlined Approach, 이하 "SSA")를 선택적 세이프하버(Safe harbor)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향후 재무부가 관련 규정을 공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주요 발표 내용

재무부가 공지한 Amount B 의 접근방식은 OECD 의 최종 합의안 및 추가 지침(이하 "OECD 보고서)과 실질적으로 유사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OECD 보고서에서는 확정되지 않았던 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 SSA는 납세자에게 선택적 세이프하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SSA 적용을 선택할 수 있지만, IRS가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SSA는 유통업자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관할권에서 SSA를 채택하지 않았다면 해당 관할권에서는 SSA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모든 적격범위 내의 거래에 SSA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적격범위는 OECD 보고서에 명시된 Amount B 기준과 순매출액 대비 영업비용 비율(OES)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는 납세자가 SSA를 적용할 거래에 대한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SSA는 연도별 선택 사항이므로 매년 일관되게 SSA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SSA는 미국 소재의 유통업자 또는 SSA를 채택하지 않은 해외 관할권의 유통업자의 순매출액 대비 영업비용 비율(OES)이 3%에서 30% 사이인 거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SSA를 채택한 해외 관할권의 경우, 영업비용 대비 순수익 비율의 상한선을 해당 관할권에서 허용한 상한선으로 설정합니다. OECD 보고서는 이 상한선을 20%에서 30% 사이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재무부는 가장 높은 임계값을 상한선으로 선택했습니다.
- 납세자는 SSA를 적용하려는 거래를 세금신고서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거래에 대한 기본 설명, 거래 상대방과 해당 법인이 설립되거나 소재한 과세관할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납세자는 IRS가 SSA의 적법한 적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구비해야 하며, 미구비 시 재무부 규정 Section 1.6662-6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문서화 관련 규정도 개정되어 분석방법의 선택과 관련된 일부 요구사항은 완화되었지만, SSA 적용 거래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구비해야 한다는 신규 요구사항도 추가되었습니다.

### **정책 지속성 및 적용 가능성**

재무부가 SSA 적용에 관한 규정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며 특정 부분에 한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들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관련 규정이 Federal Register에 게재되기 전까지 공지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SS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또다른 임시규정을 발표하거나 본 발표 내용을 철회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SSA 적용을 고려하는 납세자는 해당 정책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방향성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호주: 국가별보고서 제출면제 규정 도입**

호주 국세청(ATO)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국가별보고서에 대하여 다음의 3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 호주에 소재한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 모회사이거나 해당 그룹의 연결대상 종속법인이며, 그룹이 해외사업이 없는 경우(즉, 국외에 구성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 해외에 소재한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 모회사의 연간 글로벌 소득이 10억 AUD 이상이지만, 해당 모회사가 소재한 관할권의 현지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
- 직전연도에 그룹 구성원으로 인해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이었지만 현재 과세연도에 그룹으로부터 분할 또는 매각되어, 향후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닐 경우(통합기업보고서 제출면제 또한 가능)

##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3 서 3145, (2024.11.19)

제목: 합병특례규정의 경우 내국법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주식을 양수도 한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고, 납세자가 주장하는 주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는 경우 처분청이 할증평가를 반영한 상증법상 평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프랑스 소재 외국법인으로, 2021.7.1. 프랑스 민법상 절차에 따라 완전 자회사(A)가 소유한 자산 전부[국내비상장법인(주)B의 지분 44%(쟁점법인 및 쟁점주식) 포함]를 포괄적으로 이전(쟁점이전절차)받았는데, 이에 따르면 자회사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이전 받게 되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원천징수 등)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아니함.
- 처분청은 쟁점이전절차에 대하여 외국법인들 간의 국내주식거래로서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쟁점이전절차 당시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이 양도가액이 되어야 하는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제8조의 방법을 준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의 기준시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할증평가한 1주당 000원(“처분평가액”, 심판청구 이후 1주당 000원으로 감액)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하여, 2022.10.1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

인에게 2021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9. 심판청구를 제기함.

## 2) 쟁점

- 프랑스 민법상 쟁점주식의 이전절차에 따르면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양도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별도 산정하더라도 처분평가액보다 쟁점매매액이 우선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3)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주장
<p>(1) (주위적: 쟁점①) 쟁점이전절차의 근거인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을 때 강행규정으로 자회사의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어 애당초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이전절차는 형식적 구조조정 절차에 따른 포괄적 자산승계 과정에 불과하므로 쟁점이전절차 당시의 실거래가액(장부가액)이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합리적 고려 없이 인위적으로 산정·계산한 처분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볼 명분이나 정당성 및 합리성은 찾기 어려움.</p> <p>(2) (예비적: 쟁점②) 설령, 실거래가액(장부가액)이 존재함에도 그와 달리 별도의 정상가격을 찾아 양도가액으로 보려면 무엇보다 쟁점이전절차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국조법 제8조에 따라 합리성이 전제된 가격을 찾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찾아보려는 최선의 노력은 취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행정편의와 과세처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처분평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단정하였는데, 이는 위법·부당함.</p> <p>-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 등에 기초한 보충적 평가에 앞서 합리성이 전제된 정상가격 산출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처분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의제하기에 이전에 실거래사례 등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쟁점이전절차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쟁점주식이 1주당 000원에 거래(쟁점매매 및 쟁점매매액)되었고 이는 외부평가기관의 정당한 평가를 거쳐 특수관계 없는</p>	<p>(1) (주위적: 쟁점①) 외국법인들 간의 합병거래에서, 피합병법인(소멸법인)이 소유한 내국법인의 지분이 이전(소멸법인 → 존속법인)될 때,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함은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10.30. 선고, 2010두7208 및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5두1984 판결 등)로 이미 정립된 사안으로, 쟁점이전절차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들 간에 쟁점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장부가액)으로 거래한바,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이 되어야 하므로 그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함은 당연함(쟁점이전절차에서 적용된 장부가액은 저가로서 적법한 양도가액이 아님).</p> <p>(2) (예비적: 쟁점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3항은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이전절차의 경우 달리 정상가격을 산출할 다른 합리적인 방법은 없었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삼은 것으로 적법함.</p> <p>-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평가액에 앞서 쟁점매매액이 정상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매액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주처리를 위해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거래가액으로서 일반적인 매매사례로 볼 수 없으므로 국조법 제8조 제1호에서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물론, 같은 조 제6호의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으로도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별다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존재하</p>

<p>자 간에 거래된 것이므로 쟁점이전절차 당시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양도가액)이 되기에 충분함.</p> <p>- 국제거래에서의 정상가격이란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상의 “시가” 개념과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어서, 국내세법상 “시가”로 광범위하게 간주되는 보충적평가액을 바로 사용하기보다 국제적 합리성에 중점을 둔 “정상가격”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평가액이 쟁점이전절차 당시 쟁점법인의 상황, 실질, 특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상가격으로 볼만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전무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시가에 기초한 처분평가액을 선불리 정상가격으로 의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부당함. 적어도 매매사례가 존재하고 그 거래가 부당하다는 등의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그 거래가액(쟁점매매액)은 정상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함.</p>	<p>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및 상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처분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삼은 것은 적법함.</p>
--	--

#### 4) 판단 및 결론

-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이전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전을 계기로 당해 주식에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내국법인의 경우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되, 예외적인 경우(적격합병)에 한하여 양도차익이 산출되지 않도록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외국법인은 주식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할 뿐,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을 내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과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대법원 2013.10.30. 선고, 2010두7208 판결),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른 쟁점주식의 이전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내국법인 간의 합병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적격합병의 경우)과 달리 과세하더라도,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과세를 두고 설립준거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조세조약상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7.12.13. 선고, 2015두1984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매액이 국조법 제8조 제1호의 비교가능 제3자 거래방법 또는 제6호의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이고, 할증평가

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매액은 소규모의 단주처리를 위해 주주들과 쟁점법인 간의 매매형식의 개별 거래에서 산정된 것으로서, 해당 거래는 쟁점법인 발행 주식의 44%에 달하는 주식이 일괄적으로 이전된 쟁점이전절차와는 그 규모와 성격 등이 상이하여 쟁점매매액은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점, 쟁점매매액은 현금흐름할인방법(DCF)을 참고하여 이루어진바, 현금흐름할인방법은 기업의 과거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영업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하고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기업평가 시 주요 변수(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성장률, 잔존가치 등)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특히 추정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현재 자산 가치가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그 적용은 엄격하게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22중6301, 2023.3.16., 같은 뜻임), 한편, 쟁점이전절차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쟁점법인의 경영권이 청구법인의 완전 자회사로부터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사 경영권의 이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은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도 아니며(대법원 2003.2.11. 선고, 2001두8292 판결), 달리 할증평가의 적용을 배제할 사유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처분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03 관세

### 한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개정, 미국 배터리 셀 HS Code 유권해석 변경

#### 1. 개요

지난 12월 10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수출입 통관시 신고서 등에 기재해야 하는 HS Code를 규정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하였음을 밝히고, 해당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전까지 배터리 셀(Cell)을 부분품 HS Code인 제 8507.90호로 분류하여 왔으나, 지난 11월 6일 유권해석 변경 제안 공문을 통해 완제품 HS Code인 제 8507.60호로 분류의견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주요 개정사항

가.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신기술·신생 에너지 관련 품목 신설

- 전기차 부품이나 수소연료시스템, 수전해 설비, 서비스 로봇 등의 신기술 물품이 '기타 호' 등에 포괄 분류되어 있어 공급망 관리와 무역통계 산출 등에 어려움이 있

어 이를 신설하려는 것임 (예시: 제8504.40-2020호, 제8511.10-2000호, 제8428.90-2000호 등)

나. 국민보건·환경보호 등을 위해 통관상 관리가 필요한 품목 신설

- 구이용 숯(착화제), 수도꼭지(납성분), 중국산 활어(국내산 둔갑), 스텐트(관상동맥용), 인공수정체(안구)와 수소불화탄소(오존층 파괴물질)·포레이트(잔류농약) 등과 같이 통관상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신설하려는 것임 (예시 : 제4402.90-1011호, 제8481.80-2010호 등)

다. 품목분류 해석과 맞지 않는 HSK 체계 오류 등을 개정

- 품목분류 해석 변경 등으로 HSK 수정이 필요한 초음파 어군탐지기, 집성판, 정형외과용 스크루 등을 해석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예시 : 제9014.80-1000호, 제4421.99-9010호 등)

라. 그 외 관세율표 또는 HSK 국·영문 간 용어 불일치 등을 개정

- 관세율표와 또는 HSK 국·영문 간 용어 불일치 등을 교정함으로써 그 간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 (예시 : 제8417.80-2000호, 제8421.19-1000호 등)

관련링크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일부 개정 | 고시·공고·지침 | 기획재정부](#)

### 3. 美, 배터리 셀에 대한 HS Code 유권해석 변경

미국의 관세청인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는 지난 11 월 6 일, "리튬 이온 배터리 셀의 HS Code 분류와 관련된 5 개의 기존 유권해석(NY N335569, NY N335325 등)을 재검토한 결과, 이전 판정이 오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분류(8507.90.80, " 배터리 부품 ")를 수정하여 새로운 분류(8507.60.00, " 리튬 이온 배터리 ")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HS Code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배터리 셀의 HS Code 는 기존 제 8507.90 호(배터리 부분품)에서 제 8507.60 호(리튬이온 축전지 완제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에 따라 한-미 FTA 下 배터리 셀(Cell)의 원산지 판정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배터리 팩(Pack) 자체의 원산지 판정은 보다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터리 팩의 경우 기존에도 제 8507.60 호로 분류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은 6 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TSH 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위 원재료로 투입되는 배터리 셀의 HS Code 가 제 8507.90 호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배터리 셀이 비역내산인 경우에도 CTSH 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권해석 변경으로 인하여 향후부터는 배터리 셀의 HS code 도 배터리 팩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배터리 셀의 역내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배터리 셀의 경우 기존 제 8507.90 호로 분류되었을 경우 배터리 셀의 하위 원재료에 제 8507.90 호로 분류되는 기타 자재들이 다수 존재하여 4 단위 세번변경 기준인 CTH 를 충족하

기 어려웠으나, 이번 유권해석 변경으로 인하여 제 8507.90 호로 분류되는 원재료들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월하게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4. 시사점

물품의 HS Code 는 관세율, 수출입 요건 및 FTA 적용여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수출입 시 HS code 의 개정 및 유권해석의 변동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정확한 HS code 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Key Contacts

###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https://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https://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